

[일련번호 : 45]

양 천 구

시 정 요 구

제 목 제설기동반 일시사역인부임 산출 및 보험료 징수 부적정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△△과

내 용

1. 업무개요

△△과는 ‘2024/2025년 제설대책 추진 관련 민간 제설기동반 및 자율방재단 운영계획’ 등에 따라 제설기동반 일시사역인부임을 지급·관리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제설기동반 일시사역인부임을 지급할 때에는 ‘2024/2025년 제설대책 추진 관련 민간 제설기동반 및 자율방재단 운영계획’에 따라 시간당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하여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, 평일 주간 및 평일 야간·휴일 등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따라 각기 다른 단가를 적용하여 인부임을 산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
* 인부임 단가

- 평일 주간 : 2024년 하반기 20,890원
- 평일 야간(22~06시) : 2024년 하반기 31,335원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조, 「국민연금법」 제8조, 「고용보험법」 제8조,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6조에 따르면,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35조,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10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

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,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76조(보험료의 부담), 제78조(보험료의 납부기한) 및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(보험료의 부과 징수)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,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가. 제설기동반 일시사역인부임 산출 부적정

△△과는 제설기동반 인부임을 산출·지급함에 있어 동주민센터에서 작성한 산출내역이 적정한 지 검토한 후 지급하여야 함에도, 평일 주간 기준시간임에도 야간 단가를 적용하는 등 인부임을 부적정하게 산출한 사항을 정정하지 않고 지급하는 등 인부임을 착오지급한 사실이 있다.

[표1] 제설기동반 일시사역인부임 산출 부적정 내역

동명	근무자	근무일시	적정구분	지급금액(A)	적정지급금액(B)	착오지급액(A-B)	부적정 내역
▲▲동		-24.11.27.(수) 05:00~09:00	평일주간 7.5시간, 평일야간 1.5시간	282,010원	266,340원	15,670원	주간단가 적용 시간(06~22시)에 야간 단가 적용 (평일 야간 9시간으로 지급)
		-24.11.28.(목) 00:30~02:30		282,010원	266,340원	15,670원	
		-24.11.28.(목) 05:30~08:30		282,010원	266,340원	15,670원	
				282,010원	266,340원	15,670원	
◆◆동		-11.5.(화) 13:00~16:00	평일주간 10시간, 평일야간 2시간	302,900원	271,570원	31,330원	주간 시간(18~22시)에 야간 단가 적용 (평일야간 5시간으로 지급)
		-12.11.(수) 13:00~17:00		302,900원	271,570원	31,330원	
		-11.27.(화) 04:00~09:00		146,230원	271,570원	-125,340원	11.27.근무내역 수당 미지급

나. 제설기동반 고용보험 근로자실업급여보험료 미징수

△△과는 2025년 3~5월 민간 제설기동반 고용·산재보험료 납부하면서 근로자 18명에 대하여 근로자실업급여보험료 총 41,060원을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지 않고 예산으로 납부한 사실이 있다.

[표2] 민간제설기동반 보험료 미징수 내역

연번	근로자명	생년월일	부과월	미징수금액(원)	지적사항
1			25.4월	570	근로자 본인에게 징수하지 않고 예산으로 납부함
2			25.4월	570	
3			25.3월	1,140	
4			25.3월	850	
5			25.4월	570	
			25.5월	470	
			계	1,040	
6			25.3월	5,910	
			25.4월	760	
			계	6,670	
7			25.4월	950	
8			25.4월	570	
			25.5월	660	
			계	1,230	
9			25.3월	1,910	
			25.4월	760	
			25.5월	5,680	
			계	8,350	
10			25.4월	570	
			25.5월	660	
			계	1,230	
11			25.3월	5,910	
			25.4월	760	
			계	6,670	
12			25.3월	5,910	
13			25.3월	850	
14			25.5월	660	
15			25.3월	1,140	
16			25.5월	660	
17			25.5월	660	
18			25.3월	1,910	
			계	41,060	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△△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△△과장은

민간제설기동반 근로자에게 과다지급한 급여 총 125,340원을 환수하고, 미지급한 급여 125,340원을 지급하며, 징수하지 않은 근로자실업급여보험료 41,060원을 징수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 향후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 (시정)